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장종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856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산정기준 변경	3

I. 개요

1. 장종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85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장종태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4. 11. 26.
- (3) 회 부 일 : 2024. 11.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상수입액이 과소추계될 경우 지원금액이 감소하게 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당하는’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실제로는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미치지 않는 금액이 지원되는 등 국가 지원금액이 과소해지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국가의 책임있는 재정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국가의 공단에 대한 지원금액 규정을 ‘전전년도 결산상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여, 장기

요양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금액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
금액이 과소되는 경향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산정기준 변경

가. 개정안의 내용

- 현행법 제58조제1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고 지원 산정기준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전전년도 결산상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8조(국가의 부담) ① 국가는 매년 <u>예산의 범위 안에서</u>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u>예상수입액의</u> 100분의 20에 <u>상당하는</u>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② ~ ④ (생략)	제58조(국가의 부담) ① ----- ---- <u>전전년도 결산상</u> ----- ----- <u>수입액의</u> ----- <u>해당하는</u>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시행일: 2025. 1. 1.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58조제1항에서는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2020년~2024년 장기요양보험재정에 대한 연도별 국고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을 제외하고는 예상수입액 대비 20.0% 수준에서 국고지원이 이루어져 법정기준에 부합하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남. 다만, 2021년~2023년의 경우 예상수입액보다 실제수입액이 더 크게 나타남에 따라 실제수입액 대비 국고지원율은 19.5~19.6% 수준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연도별 국고지원 현황 >

(단위 : 억 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상수입액	65,338	75,932	90,069	99,580	111,338
실제수입액	61,605	77,314	91,688	102,266	106,696
국고지원액(A)	12,414	15,186	18,014	19,916	22,268
예상수입액 대비 국고지원율	19.0	20.0	20.0	20.0	20.0
실제수입액의 20% 금액(B)	12,321	15,463	18,338	20,453	21,339
실제수입액 대비 국고지원율	20.2	19.6	19.6	19.5	20.9
차액(B-A)	△93	277	324	537	△929

자료: 보건복지부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고 지원 산정기준을 "전전년도 결산상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고 지원 산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최근 장기요양보험료율²⁾의 지속적인 인상³⁾ 등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바,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개정안과 같이 '전전년도 결산상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20%를 기준으로 한 지원금액이 현행 방식에 의한 지원금액보다 적어질 가능성이 있음.

참고로, 2020년~2024년 실제 국고지원금 대비 개정안 적용 시 국고지원금 규모를 비교해 보면, 개정안 적용 시 연간 3,673억원~5,300억원이 더 적게 지원되었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5항 및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0만분의 9,182로 한다.

3)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8년 소득대비 0.4605%에서 2024년 소득대비 0.9182%까지 매년 인상되었음.

※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대비, 단위: %): ('18) 0.4605, ('19) 0.5497, ('20) 0.6837, ('21) 0.7903, ('22) 0.8577, ('23) 0.9082, ('24) 0.9182

< 개정안 적용시 연도별 국고지원금 비교 >

(단위 : 억 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상수입액	65,338	75,932	90,069	99,580	111,338
국고지원금(A)	12,414	15,186	18,014	19,916	22,268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수입액	(^{'18})39,245	(^{'19})49,525	(^{'20})63,568	(^{'21})78,886	(^{'22})92,975
개정안 적용 시 국고지원금(B)	7,849	9,905	12,714	15,777	18,595
차액(B-A)	△4,565	△5,281	△5,300	△4,139	△3,673

자료: 보건복지부

따라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입법례⁴⁾들을 참고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결산연도의 다음연도)에 사후정산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2025. 1. 1.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날짜가 도과하였으므로 개정안 심의결과에 맞추어 시행일을 수정하고, 국고 지원기준을 변경할 경우 어느 회계연도 예산 편성시부터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어 보임.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2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④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결산 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金)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에 관한 명확한 산정기준을 도입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함. 다만, 개정안과 같은 기준으로 국고지원을 하는 경우 현재의 국고지원금보다 과소지원되는 문제가 있어 안정적 장기요양제도 운영이라는 개정안의 취지에 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대한의사협회

- 개정안에 따라 국고지원 규모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함. 다만,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으로 변경시 기존 지원규모에 비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고지원 비율을 2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지원 규모 확대 방안 등 국가 지원금 과소 지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문 의 처

02)6788-5503